

‘공유전기차’만 타도 온실가스 줄인다

- 공유전기차 등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 승인… 온실가스 39.3만톤 감축 예상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배출량인증위원회(환경부)의 심의·의결(9.4.~9.5. 서면)을 거쳐 9월 8일 건물·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·통보하였다고 밝혔다.
-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.
-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, 보일러 난방방식(중앙 → 지역 난방) 전환,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,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이고 총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약 39.3만톤 가량으로,
 - 이 온실가스 감축량(39.3만톤 가량)은 축구장 3.6개 규모의 소나무숲(30년생)이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에 달한다.
 - * 30년생 소나무 단위면적(ha)당 연간 CO₂ 흡수량(축구장 크기) : 10.8톤/년
- 특히, 공유전기차 업체(SK렌터카)가 승인받은 외부사업은 내연기관 공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다.
- '33년까지 전기차 28만대를 도입하여 약 39.2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-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이성훈 국장은 “이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경제성 확보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면서,
 - “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	책임자	과 장	김혜진 (044-201-3252)
		담당자	사무관	남혜숙 (044-201-3255)



□ SK렌터카 전기 차량 도입을 통한 화석연료 절감사업

- (사 업 자)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,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
- (사 업 유 형) 단일감축사업
- (사 업 내 용) 국내 SK렌터카 전 지점에서 신규로 화석연료 차량 대신 전기 차량을 도입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

□ 보일러 난방방식 전환(중앙난방→지역난방)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

- (사 업 자) 한국지역난방공사
- (사 업 유 형) 단일감축사업
- (사 업 내 용) 아파트 입주민에 필요한 열 공급을 위한 난방방식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이용한 중앙난방방식에서 아파트 인근 지역난방 공급자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지역난방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

□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를 통한 전력 생산 및 사용 감축사업

- (사 업 자) 서울에너지공사
- (사 업 유 형) 단일감축사업
- (사 업 내 용) 아파트의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, 승강기 하강 또는 상승 시 생산되는 전력을 다른 회로에서 전원으로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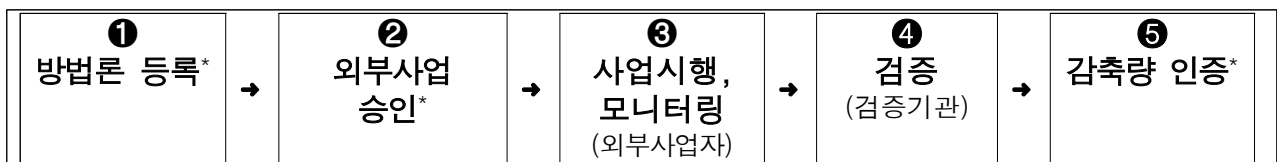
□ 전기보일러에서 히트펌프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

- (사 업 자) 신한은행
- (사 업 유 형) 단일감축사업
- (사 업 내 용) 건물 내 전기를 사용하던 온열 공급설비를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히트펌프로 대체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

참고2

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

- (근거)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및 같은법 시행령,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
- (정의) 온실가스 의무감축제도(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대상업체)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,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
- (외부사업 추진절차) 등록된 방법론을 활용한 외부사업을 승인받아 감축 활동 실시 후 최종적으로 감축량에 대한 인증실적을 발급



* 방법론 등록 · 외부사업 승인 · 감축량 인증은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· 의결 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승인 · 인증

① (방법론 등록) 신청된/직권개발한* 방법론을 기준에 따라 검토 및 환경부와 협의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쇄등록부에 등록

* 외부사업자가 개발하여 신청하거나, 관장기관이 직권으로 개발하는 방식

② (외부사업 승인)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타당성 평가 및 환경부 협의 후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

③ (모니터링) 외부사업자가 온실가스 배출 또는 흡수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

④ (검증) 모니터링 보고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 · 독립적 ·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

⑤ (감축량 인증)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관장기관 검토 및 환경부 협의 후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